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27호

2025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평가』 기관 모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평가』 기관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명: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평가

□ 사업범위

- 사업 내용과 사업 수행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구분	평가 대상	비고
사업 내용 평가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컨설팅 참여기업 100여개소) - 업종별 표준임금모델안 및 활용 매뉴얼 개발 - 확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 대상 업종 및 운영기관 ① 바이오산업 (삼정회계법인) ② 자동차부품 (에프엠어소시에이츠) ③ 조선업 (한국생산성본부) ④ IT 산업 (시애틀컨설팅) ⑤ 석유화학업 (삼정회계법인)
사업 운영기관 평가	4개 기관	

□ 사업내용

(1) 평가지표 개발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업종별 표준임금모델(안) 등 사업 내용별 평가표, 사업 운영기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 개발

* 상세 평가지표는 상호 협의하여 개발·확정

** 업종별 표준임금모델(안): 업종별 임금체계 관련 이슈·쟁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 내 기업 스스로 자사의 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안

(2) 사업 내용 평가

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평가

- (평가 내용) 기업의 참여 과정, 컨설팅 과정, 컨설팅 결과 및 만족도 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24년, '25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설계안 이행 여부, 관련 추적조사 포함(6월·11월)

- (사례발굴) 컨설팅 모범사례 선정(해당 기업 임직원의 참여 및 협력도 高, 컨설턴트 노력도 高 등), 임금체계 개선 우수사례 발굴(개선 내용의 객관적인 합리성 및 공정성 高, 해당 기업 임직원의 수용도 高 등)

② 업종별 표준임금모델안 개발 평가

- (평가 내용) 4개 업종별(바이오, 자동차부품, 조선, IT) 표준임금모델안, 표준임금모델안 활용 매뉴얼, 표준임금모델안 교육프로그램 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업종별 표준임금모델 활용 매뉴얼: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방법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참고 자료

③ 확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평가

* 확산 네트워크: 업종별 민간 주도의 임금체계 자율 개선 추진을 위한 플랫폼

- (평가 내용)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활동 내용 및 결과 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네트워크 구성: 사업 운영기관, 컨설팅 협업기관, 컨설팅 참여기업(기존 참여, 신규 참여, 참여 관심 등), 협·단체, 전문가 등

** 네트워크 역할: 컨설팅 참여기업 발굴, 표준임금모델안 활용 희망기업 대상 코칭·자문, 우수사례 발굴·홍보,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컨설팅 결과 이행 서포터즈, 정기 회의를 통한 발전방향 논의 및 피드백 등

(3) 사업 운영기관 평가

- (평가 내용) 사업추진 조직구성,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 결과 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사업 운영기관(가나다순): 삼정회계법인, 시애틀컨설팅, 에프엠어소시에이츠, 한국
생산성본부

** 사업추진 결과 예시: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결과 이행도, 컨설팅 모범사례 규모,
임금체계 개선 우수사례 규모 등

(4) 사업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사업 내용 평가와 사업 운영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18.까지

□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부가세 포함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기관

가.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5.5.20.(화) ~ '25.6.2.(월) 18:00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최근택 주무관 ☎044-202-7757)

○ 제출서류:

❶ 입찰참가신청서 ❷ 입찰서 ❸ 제안서 ❹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 제안서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3부 제출(메일 goodt0614@korea.kr로도 송부)

5. 사업자 선정방식

□ 기본방침

-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실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100)와 가격평가(20/100)로 구분
- 기술평가 점수 80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동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기 술 평 가		80
조사목적 이해도 (30점)	○ 조사목적의 이해도 - 조사 목표의 이해도, 조사내용의 이해도, 조사 필요성의 이해도	10
	○ 조사방법 및 연구내용 타당성 - 조사방법 및 연구내용의 적절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조사·연구 역량 (40점)	○ 조사 및 연구 참여인력 - 조사 및 연구 참여 인력의 적정성, 자질, 전문성	20
	○ 조사 및 연구 실행가능성 - 이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여건 등	20
관리 (10점)	○ 경영상태 - 대외인지도, 자본금 및 매출액	5
	○ 사업수행조직 - 사업영역 및 조직체계, 보유인력	5
입 찰 가 격 평 가		20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6. 제안서 안내

□ 일반 사항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을 참고,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분량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안서 구성 및 내용>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연혁, 재무현황 등) ※별첨으로 작성 가능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실적 ※별첨으로 작성 가능

II. 조사 및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III. 조사 및 연구 내용 및 방법

1. 내용
2. 방법
3. 절차 및 관리 방법
4. 자료처리

IV. 조사 및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V. 조사 및 연구 추진일정

VI. 조사 및 연구 분담표

VII. 소요예산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방법, 연구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기재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의 제출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됨. 따라서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그 제안서의 내용은 노동개혁총괄과가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로 작성함. 다만, 기술 관계자료나 참고자료는 영문도 가능함
- 특별히 제시하는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제안 요청자(노동개혁총괄과)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은 단일기관의 명의로 하되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적인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요청기관과 제안서 제출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7.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 본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을 금하며, 선정된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 사무관(☎044-202-7743) 최근택 주무관(☎044-202-7757)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및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요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분임)계약관 귀하				

<서식2> 입찰서

입찰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 공 (납 품 연 월 일)			
입찰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직인 고용노동부 (분임)계약관 귀하				

<서식3> 제안서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평가」 제안서					
사 업 명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평가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이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비	원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평가」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2. 3.					